

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전승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8. 25.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65호로 2025년 8월 14일 전승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허가권자와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3조 ~ 안 제4조)

다.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, 주민 의견수렴 및 제출 절차(안 제5조 ~ 안 제7조)

라. 심사기준, 회의 운영 및 수당·여비 지급(안 제8조 ~ 안 제10조)

마. 출장 제한, 경비 환수 및 보고서 제출·심의(안 제11조 ~ 안 제13조)

바. 사후관리 및 징계현황 공개(안 제14조 ~ 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8. 14.~2025. 8. 21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이 본래 목적과 달리 관광·외유성으로 변질되거나, 출장경비의 부적정 지출, 사전·사후 보고의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산 낭비와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.
-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윤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,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과 투명한 공무국외출장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「(개정)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 알림」을 통해 표준안을 하달하였음.
-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계획·심사·사후보고 전(全)과정의 절차를 강화하고,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,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조문 전반적으로 표준안을 준용하여 영등포구 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, 주요 개정 및 신설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.

○ 주요 조문 개정

구 분	현 행	개정(안)
심사 위원회 구성 (안 제4조)	(위원비율) 2/3 이상 민간위원 + 지방의원 가능 (구성방식) 외부추천 (위원장) 위원 중에 호선	(위원비율) 민간위원+지방의원(2명 이하) (구성방식) 외부추천 및 공모방식 가능 (위원장) 민간위원 중 호선
심사 사항 (안 제4조)	-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	-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(동행 공무원·민간인 포함)의 적합성
정보공개 확대 (안 제5·9· 12조)	-	- (의결 전)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 게시
	-	- 심사위원회 회의 종료 후 회의록 홈페이지에 게시
	-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	- 출장보고서(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,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심사기준 항목 추가 (별표)	항목	심사기준
	지방의정과 의 관련성 (국제교류, 초청 목적출장 제외)	1.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?
		2.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?
		3.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?
	항목	심사기준
	출장경비의 적정성	3.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?

○ 주요 조문 신설

구 분	신설된 조항
주민의견 수렴 신설 (안 제6조)	-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10일 이상 수렴
재의결 절차 신설 (안 제9조)	-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수렴 5일간 및 심사위원회 재의결 (제4항)
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추가 (안 제11조)	-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(제1항제5호)
출장보고서 내용 명시 (안 제12조)	[공무국외출장보고서 포함해야 하는 내용](제4항) -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- 출장 수행내용 - 출장 비용 관련 정보 - 출장결과에 의의 반영계획
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명시 (안 제13조)	-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(제2항) - 의결된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는 것 불가(제3항)
징계 요구 및 공개 신설 (안 제15조)	-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대상 있을 시 징계의결 요구(제1항) - 징계받은 경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(제2항)

□ 검토 결과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전(全)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▲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강화 ▲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▲계획변경 시 재심절차 신설 ▲계획서·보고서 공개의무 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임.

- 이를 통해 영등포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형식적·관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,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의정 활동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,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운영은 구민의 신뢰 확보와 영등포구의회 의 공정성·윤리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